

## 안양시의회회장규정

제정 2003. 5. 31 의회규정 제4호  
일부개정 2017. 4. 24 의회규정 제1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회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,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장의 사용) 의회 휘장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조(회장의 규격등)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, 모형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7. 4. 24>

1. 외형: 무궁화 형상
2. 내부: 내부에 “의회”자를 표시
3. 색상: 무궁화 형상 및 “의회”자는 황금색으로 한다.

원형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.

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. <개정 2017. 4. 24>

1.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, 표준규격은 다음과 같다.

가. 실내용 : 가로 135센티미터, 세로 90센티미터

나. 옥외용 : 가로 210센티미터, 세로 140센티미터

2. 기면의 중앙은 의회의 휘장을 표시한다.
3. 휘장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.
4.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,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, 모형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7. 4. 24>

1. 무궁화 형상: 18mm
2. 원형지름: 10mm
3. 재질: 은으로 하되, 무궁화 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 황금(색)으로 도색한다.

제4조(회장 사용제한) ① 의회 회장 도안은 의원을 제외한 개인의 관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② 의회 회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.

제5조(의회기 게양 및 관리)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. 다만,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“후렌지”를 부착한다.

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.

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을 준용한다.

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.

제6조(배지교부 및 패용)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.

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.

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.

④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결정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4. 24 의회규정 제11호>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7. 4. 24>

## 회장 모형도

(설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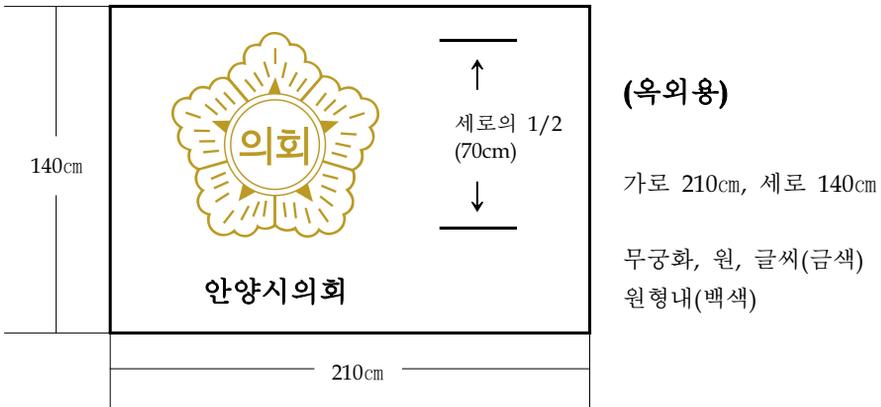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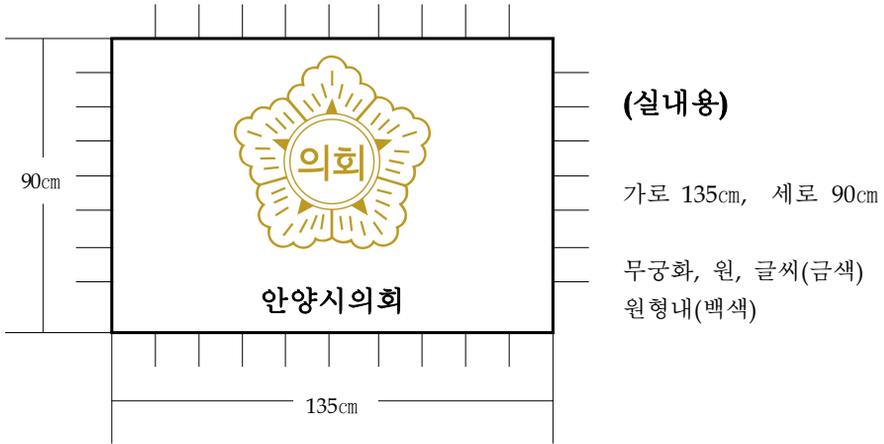
- 외형 :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꽃
- 중앙 : 시민 대표기관을 상징하는 “의회”를 한글로 표시



[별표 2] <개정 2017. 4. 24>

## 의회기 모형도

### 1. 모형 및 규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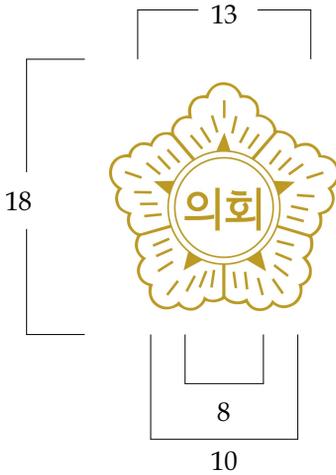
### 2. 재 료

- 옥외용 :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
- 실내용 :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 
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'술' 부착

[별표 3] <개정 2017. 4. 24>

## 배지 모형도

### 1. 모형 및 색상



### 2. 규격

모 형 내 용		규 격
무궁화형	5지	1.8cm
무궁화원자형	○	1.0cm
글 자 형	서울남산체	0.8cm

가. 휘장 직경 1.8cm

나. 휘장 바탕 및 '의회'자는 황금색

다. 원형내 백색

### 3. 재료 및 방법

가. 은(동)으로 하되,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

나. 색상 중 '금색'은 황금색으로 도금

